

# 한국섬유공학회 기부약정서

## [기부자 정보]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용
연락처	주소			
	휴대폰번호		E-Mail	

## [기부 방법]

일시기부	기부내용	<input type="checkbox"/> 일시기부 - 기부금액 :                      원 (수협은행 1010-2084-9843 / 예금주 : 한국섬유공학회)
기부정보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기부금은 **한국섬유공학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60주년 기념사업]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장려, 학술 발전 진흥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정보 공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서명)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귀하

## 한국섬유공학회 기부자 혜택

1	한국섬유공학회 섬유기술과 산업 e-저널 기부의 전당 등록										
2	본 학회가 개최하는 행사(하계세미나, 춘/추계 학술대회) 초청 <table border="1"> <tr> <td>3천만원 이상</td> <td>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2회)</td> </tr> <tr> <td>1천만원 이상</td> <td>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td> </tr> <tr> <td>5백만원 이상</td> <td>하계세미나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td> </tr> <tr> <td>1백만원 이상</td> <td>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개월)</td> </tr> <tr> <td>5만원 이상</td> <td>기부의 전당 등록</td> </tr> </table>	3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2회)	1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	5백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	1백만원 이상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개월)	5만원 이상	기부의 전당 등록
3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2회)										
1천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										
5백만원 이상	하계세미나 초청, 정기총회시 감사패 증정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1년), 섬유기술과 산업 광고계재(1회)										
1백만원 이상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3개월)										
5만원 이상	기부의 전당 등록										
3	기부금 영수증 발행										
4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table border="1"> <tr> <td>법인</td> <td>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td> </tr> <tr> <td rowspan="2">개인</td> <td>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td> </tr> <tr> <td>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td> </tr> </table>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